



환경부



수신 살생물제 제조자 및 수입자
(경유)

제목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신청 기한 등에 관한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부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사 사고의 방지를 위해 마련된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법')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등 살생물제(살생물물질, 살생물제품, 살생물처리제품)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,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법 시행('19.1.1.)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(이하 '기존살생물물질')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8조 및 제19조 등에 따라 환경부(국립환경과학원)에 신고하고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및 승인신청 등 법적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4. 이에 따라, 살생물물질 승인 행정절차(신청서류 완결성 검토,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열람 등)에 따른 법적 소요기간(1년 6개월)을 고려하여, **'22년까지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 기존 살생물물질의 신고 및 승인신청 기한 등** 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,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기한: 2021. 9. 30.까지

나. 물질승인 신청 기한: 2021. 10. 31.까지

※ 기한 이후에는 '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'화학제품관리시스템'(chemp.me.go.kr) 신고 및 승인신청 기능이 차단되며, 서면 접수도 불가

[신고 문의: 산업계지원팀(02-6050-1314~6), 승인 문의: 국립환경과학원(1800-4840)]

5. 아울러,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해 기한 내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, 승인유예 대상 물질 지정이 해제되어 해당 물질의 제조·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,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·수입하는 경우, 행정처분(제조·수입·판매 금지, 회수명령, 과징금 부과 등) 및 형사처분(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)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환 경 부 장 관



주무관 **박현숙** 환경연구관 **김혜진** 과장 전결 2021.9.2.
신건일

협조자

시행 화학제품관리과-371 (2021. 9. 2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(어진동) / <http://me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6827 팩스번호 044-201-6786 / moski1@me.go.kr / 대국민 공개